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제출안내 ①



※ 제출하시는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아래 서류 외 적격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제출구분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공통 서류 | 필수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필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 |
| | 필수 |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 |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본인 |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보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등 상세증명으로 전부 공개 발급 |
| |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개명 시 개명전/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모두 제출 |
| | 해당자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배우자 | •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상기 등본 발급 사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해당자 (추가) | 복무확인서 | 본인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 | 해당자 (추가)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 세대원 중 청약약지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공통①] 해외근무자(단신부임)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발급 |
| | 해당자 (추가) | 전세피해자 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단, 낙찰주택이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공통②] 전세피해자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발급 |
| 신혼 부부 |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과거 3년 이상의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필수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명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증명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별첨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증빙 제출 서류 참고하여 발급 |
| | 해당자 (추가)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별첨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 참고하여 발급 |
| | 해당자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또는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등 상세증명으로 전부 공개 발급 |
| | 해당자 (추가)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직계존속 |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보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해당자 (추가)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태아를 자녀로 인정보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해당자 (추가)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부적격 당첨 동보자 | 해당자 (추가) | 무주택 소명서류 | 해당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 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해당자 (추가)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기관 |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
| 대리인 제출시 | 필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 |
| | 필수 | 위임장 | 본인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 | 필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 필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제출안내 ②



■ 소득 구분

| 단계 | 소득구분 | 내용 |
|-----|----------------|--|
|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3단계 | 우선공급 (3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
| 4단계 | 일반공급 (15%)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 5단계 | 추첨공급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소득구분 | | 비율 | 소득금액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이하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8,405,411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11,475,938원 | ~12,421,792원 | ~13,367,645원 |
|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140% 이하 | 7,004,510원~ 9,806,313원 | 8,248,468원~ 11,547,854원 | 8,775,072원~ 12,285,099원 | 9,563,283원~ 13,388,595원 | 10,351,494원~ 14,492,090원 | 11,139,705원~ 15,595,586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60% 이하 | 8,405,412원~ 11,207,214원 | 9,898,161원~ 13,197,547원 | 10,530,086원~ 14,040,114원 | 11,475,939원~ 15,301,251원 | 12,421,793원~ 16,562,389원 | 13,367,646원~ 17,823,526원 |
| 추첨공급 |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9,806,314원~ | 11,547,855원~ | 12,285,100원~ | 13,388,596원~ | 14,492,091원~ | 15,595,587원~ |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 11,207,215원~ | 13,197,548원~ | 14,040,115원~ | 15,301,252원~ | 16,562,390원~ | 17,823,527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제출안내 ③



[별첨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또는 홈택스) |
|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원본(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날인) | ①, ② 해당 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①, ② 해당 직장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재직증명서 원본(직인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 ①, ③ 해당직장 ② 세무서 |
|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 ② 세무서 |
| 금년도 신규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가입자> 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입 확인)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기준소득월액) ※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① 세무서 ② ③ 국민연금공단 ④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③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⑤ 재직증명서 | ①, ③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⑤ 해당직장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과세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①, ② 세무서/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① 행정복지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원본(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자급조서 원본(직인날인) | ①, ② 세무서/해당직장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서식) ②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제출안내 ④



[별첨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해당 자산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를 하여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출구분 | 자산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 필수공통 | ①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전 세대원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모든 부동산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구 단위로 체크 후 발급 |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 |
| | 필수 추가 (해당부동산) |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④ 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서 | ④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 | | 단독주택 | ④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④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 | |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 | ④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④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 기타지역: 위택스(www.wetax.go.kr) 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 | 토지 | ④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④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
| 해당자 (추가) |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농지 : ① 농지원부 / 초지 :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 | |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 필수 | ①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전 세대원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출력 방법

※ 아래 화면이 보이도록 화면 캡처하여 출력,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조회결과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신청
포괄승계인신청

신청인

- 본인인증방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 신청인구분 내국인
- 성명(명칭) 홍길동 ① 신청인 이름 기재
- (주민)등록번호 080808 - 1234567 ②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 공개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검색

-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조회명의를
③ 조회내역이 없음 문구가 보이도록 화면 캡처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내역이 없습니다. 소유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소유현황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